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4의3] <개정 2024. 8. 30.>

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(제13조의4제3항 관련)

구 분	대상 범죄
1. 아동 대상 성범죄	가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7조의2, 제8조, 제8조의2, 제9조부터 제15조까지,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다.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,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. 「아동복지법」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
2. 성인 대상 성범죄	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
3. 가정폭력 관련 범죄	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
4.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	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및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죄(제17조제2호는 제외한다)
5. 마약 관련 범죄	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